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7497, 2013다27503(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7497, 2013다27503(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자 2012재나532, 2012재나617 결정

전 문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별지 원고(재심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재심피고), 상고인대한민국

판결 선고 2015. 12. 2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재나532, 2012재나617(병합) 판결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1.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은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그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그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전 소송인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는 물론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흡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인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적법하고, (2) 서울고등법원 68사24호 재심청구사건을 심리한 재심법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68. 2. 9. 선고 67나1001 판결(이하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이라고 한다)의 증거가 된 증인 L의 증언에 관한 위증사건에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L에 대하여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하였고, 같은 증거가 된 문서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건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실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확정판결이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에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같은 조 제2항,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판단의 기초가 되었던 형사판결이 형사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로 바뀌었고, 그 밖에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4 판결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확정된 종국판결인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에 대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에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 67나1001판결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심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그 재심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별지